

<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>

(1)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

인적공제 + 연금보험료공제 +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+ 특별소득공제

1. 인적공제

(1) 기본공제

구분	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 <sup>*1</sup>
본인		-	-
배우자		-	100만원 이하 (단,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해당됨)
부양가족 <sup>*2</sup>	직계존속	60세이상	
	직계비속·입양자 <sup>*3</sup>	20세이하	
	형제자매	60세이상, 20세이하	
	수급자	-	
	위탁아동 <sup>*4</sup>	18세 미만	

정리사항

\*<sup>1</sup> ① 비과세·과세제외·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 금액 기준

② (종합+퇴직+양도)의 합계액 기준

\*<sup>2</sup>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·형제자매도 포함

② 계모·계부·의붓자식도 포함

\*<sup>3</sup> 직계비속·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

\*<sup>4</sup> 당기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(전기에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전기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)

(2) 추가공제(항목간 중복적용가능하나, ③과 ④에 모두 해당되면 ④적용)

구분	공제사유	1명당 공제액
① 경로우대자	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	100만원
② 장애인	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	200만원
③ 부녀자 <sup>*5</sup>	나자신이 ①남편있는 여성 ②남편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	50만원
④ 한부모	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, 입양자가 있는 경우	100만원

\*<sup>5</sup> ① 당기 종합소득금액 3,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함

② 여성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따름

※ 인적공제 관련 추가 정리 사항

(1)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대상이 되는 자

- ① 배우자, 직계비속, 입양자
- ② 동거가족이 취학·질병요양·근무상·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
- ③ 거주자( 그 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

(2) 나이요건·소득금액요건 등 판정시기

- ① 원칙 : 과세기간종료일(12.31) 기준
- ② 예외 : ㉠ 12.31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일 기준, 장애 치유자는 치유일 전일 기준  
㉡ 당기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함
- ③ 나이계산 : 나이 계산시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나,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출생일을 불산입하여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공제대상자를 정하고 있음.

(3) 1명이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

- ① 중복공제되지 않으며, 그 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이 됨
- ②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불분명한 경우  
㉠ 甲의 배우자가 乙의 부양가족에 해당될 때 : 甲의 배우자로 함  
㉡ 甲의 부양가족이 乙의 부양가족에 해당될 때 :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자의 부양가족으로 함 단, 직전연도에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으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부양가족으로 함
- ③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함.

2. 연금보험료공제

-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공적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: 전액 공제
-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, 특별소득공제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

3.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

- 대상 :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

·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: min(①, ②, ③)
①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
② 200만원
③ 연금소득금액

#### 4. 특별소득공제

다음 금액을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특별소득공제 : 보험료공제 + 주택자금공제

##### 1) 보험료공제

-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액 : 전액공제

##### 2) 주택자금공제

· 주택자금공제액 : min(①, ②)

① min(㉠, ㉡)

㉠ (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\*<sup>1</sup> + 국민주택임차자금의 「원리금」상환금액\*<sup>2</sup>) × 40%  
+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「이자」상환액\*<sup>3</sup>

㉡ 한도액 : 연 300만원

② 한도액 : 연 500만원\*<sup>4</sup>

\*<sup>1</sup>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납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)을 말함

\*<sup>2</sup> 무주택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, 이하 \*<sup>3</sup>에서 같다)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

\*<sup>3</sup> 여기서 ‘ 장기임대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’ 이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함

\*<sup>4</sup>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대신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함

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

㉠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: 1,800만원

㉡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: 1,500만원

②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: 300만원

#### 5.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

-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 적용×
- 입증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: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공제. 단, 나중에 제출 시 인정

(2)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

1.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

(1) 적용대상 및 공제배제

구분	내용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에게만 적용</li> <li>· 사업자로부터 2016.12.31.까지 재화·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</li> <li>· [근로자 본인 + 배우자(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) + 본인의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·입양자(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)]의 사용액</li> </ul>
공제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공 또는 위장가맹점 명의 등 비정상적인 사용액</li> <li>·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것은 공제배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관련 비용, 법인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</li> <li>② 정당(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)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(정치자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③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</li> </ul> </li> <li>· 증빙과제 정착과는 무관한 다음의 것은 공제배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보험계약(생명보험 등)의 보험료·공제금</li> <li>② 공적 교육비 :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,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 포함),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 기타 공과금</li> <li>③ 국세·지방세, 전기료·수도료·가스료·전화료·아파트관리비·텔레비전시청료·도로통행료</li> <li>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, 리스료</li> <li>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</li> <li>⑥ 국외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</li> <li>⑦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·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·수수료등의 대가</li> <li>⑧ 차입금 이자상환액,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·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, 수수료, 보증료</li> </ul> </li> </ul>

\* [주의]

-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·체육시설 등의 수강료, 교복구입비 등은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함
- 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·체육시설 등의 수강료 외의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나,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
- ③ 가족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
- ④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

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함

(2) 신용카드등사용액의 범위

① 신용카드 사용액 ② 직불카드사용액(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등)

(3) 소득공제액의 계산 : p 246 참조

## 2.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

· 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

: min(① 공제부금납부액, ② 한도: 연 300만원)

## (3)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

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

→ (소)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

(조)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, 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,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,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소득공제,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